기술분쟁 조정·중재

- >>>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조정·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
 - (조정)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(재판상 화해의 효력)
 - (중재)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(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)
 - *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중재합의가 필요하며, 중재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(소송불가)

🏚 조정·중재 장점

[회 전문성

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

- 전·현직 판사, 변호사 등 직능위원
- •기계.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



14 객관성

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

-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
-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도출

♠ 신속성

재판보다 빠른 분쟁 해결

-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
-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

③ 경제성

부담없는 해결 비용

-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
-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
- 소송비용 지원
-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
신청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
* 제외대상 : 유흥·향락업.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
🕞 지원내용

전 · 현직 법조인,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중립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하며, 법적 대응 비용 지원 • (비용지원)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금액
조정 · 중재 대리인 선임비용	·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(변호사) 선임비용 지원	최대 1,000만원
소송비용	·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,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	최대 2,000만원
기술가치평가 비용	·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	최대 5,000만원

🕞 지원절차

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 (중재 판정)



조정・중재 절차 사실조사 및 신청서 접수 조정·중재부 답변서 및 조정성립 조정부 회의 조정안 제시 및 서류검토 구성(3~5인) 보완서 제출 또는 불성립 (1-3회) 사실조사 및 당사자간 중 답변서 및 중재신청 중재부구성 중재부 회의 중재판정 재 신청합의 보완서 제출 (1-3회)

분쟁범위

중소기업 기술(산업재산권, 저작권, 영업비밀, 경영정보 등)

수수료

신청금액에 따라 상이

구분	신청금액	수수료(부가세 별도)
조정 -	1억원 미만	10,000원
	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30,000원
	10억원 이상	50,000원
	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	10,000원
중재	1천만원 미만	20,000원
	1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5,000원+신청금액×0.15%
	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55,000원+신청금액×0.10%
	10억원 이상	555,000원+신청금액×0.05%
	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	20,000원

^{*} 수수료 감면대상: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,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,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

♦ 상담·접수

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· 중재위원회(02-368-8768~9)

신청방법

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/우편 신청

* 이메일: solomon@win-win.or.kr